

---

**탄소중립캠퍼스 추진을 위한  
대학생 정책 제안**

---

**2022. 02. 08.**

## 1. 탄소중립(친환경)캠퍼스 추진 필요성

▶ 전국 400여개 고등교육기관(대학)의 250만 이상의 대학생이 미래의 꿈을 현실화하는 캠퍼스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지원이 일부 국공립대학에 국한되어 있음.

- 공공기관 목표관리제에 따라 지정된 국공립대학 30여개,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20여개)
-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전체 대학의 20% 미만임.
- 대학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, 우리나라 대학은 법규상으로도 공적기관이자 사회공헌 기관임. 일본 도쿄대학교는 대학을 사회의 공공재(公共財)로 보고 있음

▶ 우리나라 전국 대학(고등교육기관, 430개교, 2018년 교육부 교육 기본통계 자료)의 총 온실가스배출량은 건물부문 전체 배출량의 20%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
▶ 대학의 지속가능캠퍼스(친환경)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친환경캠퍼스 지표 수립 및 달성목표 등을 정부기관(환경부 등)과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.

▶ 대학의 고유가치인 미래 친환경사회를 이끌 대학생의 교육 등을 정부기관(교육부 등) 및 환경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함이 필요함

## 2. 탄소중립캠퍼스 추진 정책 제안

### 사)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

#### 정책제안 1. 탄소중립기본법의 대학(지속가능캠퍼스) 추가 제정

##### 학생 대표: 고려대학교 한보미

##### 1)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

기존	변경
<p>제 5조(공공기관,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)</p> <p>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유도하며, 예산의 수립과 집행,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 5조(공공기관, <b>대학</b>,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)</p> <p>① 공공기관 <b>및 대학은</b>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제66조 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유도하며, 예산의 수립과 집행,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- ▶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학을 포함하여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와 예산 수립·집행 과정을 통한 기후위기 영향 최소화 과정이 필요함.

##### 2)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/제43조

기존	변경
<p>제27조(목표관리대상 공공기관)</p> <p>7.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 대학 및 공립대학</p>	<p>제27조(목표관리대상 공공기관)</p> <p>7.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 대학, 공립대학 및 <b>사립대학</b></p>
<p>제43조(녹색건축물의 확대 등)</p> <p>7.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 대학 및 공립대학</p>	<p>제43조(녹색건축물의 확대 등)</p> <p>7.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 대학, 공립대학 및 <b>사립대학</b></p>

- ▶ 고등교육법 제3조(국립·공립·사립 학교의 구분) 제2조 각 호의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는 국가가 설립·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(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·도립학교로

구분할 수 있다), 학교법인이 설립·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.

- ▶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일부 국립 및 공립대학에만 국한된 법의 제정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제1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, 사립대학도 포함시켜야 함.

## 정책제안 2. 탄소중립캠퍼스를 향한 목표관리제의 재정지원

### 학생 대표: 카이스트

- ▶ 목표 관리제 시행을 위한 학생 자체 평가단 실시  
매년 5%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관리제 시행을 하며, 재학생 자체 평가단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. 또한 평가교육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- ▶ 2030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정부의 지속가능캠퍼스의 지원은 환경부의 5개 대학에 총 6억원(1개 대학 12,000만원/연) 임.
- ▶ 매년 50개 대학에 3억원 사업비 지원 및 인벤토리 구축 의무화 시행
- ▶ 매년 5% 이상의 온배가스배출량 감소 목표관리제 시행

## 대자연

---

## 정책제안 3. 대학의 탄소중립 교육 플랫폼 구축 지원

### 학생 대표: 서울대학교 최원석

- ▶ 모든 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및 그린리더 양성프로그램 필수 개설
- ▶ 탄소중립 교육의 단계별 발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육부 산하기관 설립
- ▶ 탄소중립 교육평가지표 수립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순위 언론공개

## 정책제안 4. 대학생 참여형 탄소중립캠퍼스 문화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

### 학생 대표: 인하대학교 유진

- ▶ 캠퍼스 환경의 날 제정 및 캠퍼스 환경의 날 주간을 지정하여 대학의 친환경 축제 지원
- ▶ 모든 대학에 탄소중립캠퍼스위원회(총장 이하, 교수, 분야별 전문가, 대학생 대표 단으로 구성)를 구축하여 대학생 참여형 탄소중립 문화 확산

**정책제안5. 대학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'캠퍼스 RE100' 제도 도입 지원**

**학생 대표: 김지은 의장**

- ▶ 대학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이행보고서 발간 의무화 및 대학 정보공시 주요 지표에 추가
- ▶ 대학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생산, 저장, 소비를 위한 산학협력 및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

**정책제안 6. 지속가능캠퍼스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본여건 마련(교육부) 지원**

**학생 대표: 정민형 의장**

- ▶ 대학 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원 및 설비 지원
- ▶ 분리배출 업무 부하 감소를 위해 단위 면적당 청소용역노동자 수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 등의 복지제도 도입